

충청북도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 번호	37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4. . . .

제 출 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회의록의 무료배부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
- 회의록 기록의 공정성·객관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부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을 기 인쇄된 부수내에서 무상으로 배부하고(안제53조5항)
- 위원회 회의록 작성은 제66조1항에 의거 전부 속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2항에서는 요약, 기록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 하려는 것임 (안제66 조2항)

3. 관련법규

-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, 제66조